

1. 개정이유

문화재청 본부에 역사문화권 및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증원한 문화재청 본부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284”를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83”을 “28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0”을 “6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을 “9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3”을 “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5”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4”를 “65”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7”을 “9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0”을 “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02”를 “101”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보 “5”를 “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0”을 각각 “4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및 전산주사보 “1”을 각각 “2”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1”을 각각 “4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및 전산주사보 “1”을 각각
“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9”를 각각 “28”로 하고, “시설서기보 1”
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8”로 하고, 학예연구사 “11”
을 “13”으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6”을 각각 “48”로 하고, 학예연구사
“11”을 “13”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 본부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 제 ②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된 별표 5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명)은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② ----- ----- ----- ----- ----- ----- ----- ----- ----- ----- ----- ----- ----- <u>2023년 12월 31일</u>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원되는 별표 15의2의 정원 1명(시설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명,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명), 별표 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illegible]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84</u>	<u>287</u>	+3
	.		.	.	
	.		.	.	
일반직 계			<u>283</u>	<u>286</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60</u>	<u>61</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87</u>	<u>90</u>	+3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0</u>	<u>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93</u>	<u>296</u>	+3
	.		.	.	
	.		.	.	
일반직 계			<u>292</u>	<u>295</u>	+3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64</u>	<u>65</u>	+1
	.		.	.	
	.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87</u>	<u>90</u>	+3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0</u>	<u>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u>102</u>	· <u>101</u>	-1
일반직 계	·		·	·	
	·		·	·	
	·		·	·	-1
행정주사보	·		·	·	
	·		·	·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0</u>		<u>42</u>	+2	
일반직 계			<u>40</u>		<u>42</u>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u>		<u>2</u>	+1	
		.	.		.		
		.	.		.		
전산주사보			<u>1</u>		<u>2</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41</u>	<u>43</u>	<u>43</u>	+2	
일반직	계	·	·	·	·		
			<u>41</u>	<u>43</u>	<u>43</u>	+2	
		·	·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			<u>1</u>	<u>2</u>	<u>2</u>	+1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	·	·	·		
		·	·	·	·		
전산주사보			<u>1</u>	<u>2</u>	<u>2</u>	+1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29</u>	<u>28</u>	-1
일반직 계			<u>29</u>	<u>28</u>	-1
	.		.	.	
	.		.	.	
<u>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46</u>	<u>48</u>	+2
일반직 계			<u>46</u>	<u>48</u>	+2
	.		.	.	
	.		.	.	
학예연구사			<u>11</u>	<u>13</u>	+2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46</u>		<u>48</u>	+2	
일반직 계			<u>46</u>		<u>48</u>	+2	
	.		.		.		
	.		.		.		
학예연구사			<u>11</u>		<u>13</u>	+2	
	.		.		.		
	.		.		.		